# 오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

제정 2002년 9월 26일 규칙 제502호
일부개정 2023년 9월 1일 규칙 제948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23. 9. 1〉

**제2조(기금의 귀속)** ① 「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40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고, 100분의 60은 오산시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에 귀속한다.〈개정 2023. 9. 1〉

② 삭제 〈2023. 9. 1〉

**제3조(기금의 사용)** 조성된 기금은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안에서 2006년부터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

**제4조(대출업무등의 위탁협약)**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·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,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
2.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
3. 기금의 대하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(이하 “수탁금융기관”이라 한다)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.

**제5조** 삭제 〈2023. 9. 1〉

**제6조(회의)**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

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7조(회의록)**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의 직·성명
3.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8조(융자신청서의 제출)**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
2. 시설개선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서식)
3.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(별지 제3호서식)

**제9조(융자대상자의 선정)**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,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.

1. 휴·폐업중인 업소
2.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퇴폐·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
3.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2회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
4.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

**제10조(융자 및 상환조건)** ① 업종별 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〈개정 2023. 9. 1〉

1. 위생관리시설·위생설비시설개선자금

가. 식품제조·가공업: 업소당 2천만원이내

나. 식품접객업(모범음식점·위생등급지정업소를 제외한다): 업소당 1천만

원 이내

다. 모범음식점・위생등급지정업소: 업소당 2천만원 이내

라.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시설 개선자금: 업소당 5백만원 이내

2. 모범음식점・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: 업소당 3천만원 이내

3. 「식품위생법시행령」 제61조제1항제18호의 사업 중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(「감염병의 예방 및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)가 발령된 경우,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관리・운영에 필요한 자금: 1천만원 이내

4. 삭제 〈2023. 9. 1〉

② 제10조 제1항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. 다만, 재난 및 경제상황,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할 수 있다. 〈개정 2023. 9. 1〉

③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리를 명기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〈개정 2023. 9. 1〉

1.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

가. 식품제조・가공업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
나. 식품접객업(모범음식점・위생등급지정업소를 제외한다)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
다. 모범음식점・위생등급지정업소 :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

라.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시설개선자금: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

2.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: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

3. 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금: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

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.

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영업자는 융자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시설개선을 완료해야 한다.〈신설 2023. 9. 1〉

1. 식품접객업(모범음식점・위생등급지정업소를 포함한다): 2개월 이내
2. 식품제조・가공업: 5개월 이내

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융자받은 영업자가 자재 조달이나 공사 지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개선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여한다.〈신설 2023. 9. 1〉

⑧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 연체이자율로 하되 최고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 최고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로 한다.〈신설 2023. 9. 1〉

**제11조(융자금의 대하)** ① 시장은 조례 제6조 및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,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.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.

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하하여야 한다.

④ 수탁금융기관은 대하받은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융자금액의 감액조정등)** ①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시설개선융자금 대하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3조** 삭제 〈2023. 9. 1〉

**제14조(융자상황등의 제출)**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이에 따라 매분기 말일 현재의 분기별 융자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〈개정 2023. 9. 1〉

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수납·현금출납 및 보관업무에 관한 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〈개정 2023. 9. 1〉

**제15조(사후관리등)** 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.〈개정 2023. 9. 1〉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자금을 융자받은 영업자로부터 사업완료신고서의 징구, 현지실사·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〈개정 2023. 9. 1〉

③ 제12조제3항에 따라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·비치해야 한다.〈개정 2023. 9. 1〉

**제16조(세부사항)**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부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① 이 규칙 시행전에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된 기금과 이 규칙 시행이후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되는 기금의 관리는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.

② 시설개선융자사업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으로 실시하는 융자사업이 지

속될 때 까지는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우선으로 한다.

**부칙** 〈2023. 9. 1 규칙 제948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〈개정 2023. 9. 1〉

#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

<table>
<tr><td>대 표 자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생년월일</td><td></td></tr>
<tr><td>업 소 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전화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소 재 지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융자금의 용도</td><td>1. 영업장 시설개선<br>2. 화장실 시설개선<br>3. 운영자금<br>(모범음식점·위생등급지정업소)</td></tr>
<tr><td>융자신청금액</td><td colspan="4">총사업비 : 천원<br>(융자신청금액 : 천원, 자부담 : 천원)</td></tr>
<tr><td>대상업종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영 업 현 황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식품접객업</td><td>업소규모</td><td>제곱미터</td><td rowspan="3">제조.가공업</td><td>업체규모</td><td>제곱미터</td></tr>
<tr><td>월평균매출액</td><td>천원</td><td>연간매출액</td><td>천원</td></tr>
<tr><td>영업장소유구분</td><td>자가.전세.기타</td><td>영업장소유구분</td><td>자가.전세.기타</td></tr>
</table>

오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제13조 및 같은조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오산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(신청인) (인)

**오 산 시 장 귀하**

〔구비서류〕

1. 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
2.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 1부

[별지 제2호서식]〈개정 2023. 9. 1〉

# 시설개선사업계획서

1. 사 업 명 :

2. 소요자금 (실소요금액) :

3. 신 청 금 액 :

4. 현 황 ( 규모.시설) :

5. 계 획 내 용 :

6. 상 환 계 획 :

7. 기 타

〔첨부〕관련증빙서류 1부

년 월 일

〔신청인〕 (인)

[별지 제3호서식]〈개정 2023. 9. 1〉

# 사 업 이 행 확 약 서

「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에 의하여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고,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.

1.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(식품제조 · 가공업 5개월 이내)에 사업을 완료하고, 융자금은 지정된 사업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겠습니다.
2. 융자금을 융자받은 후 본 업소를 폐업 ·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 등으로 폐쇄하거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겠습니다.
3. 대출 당시 오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오산시에 사전 신고 및 융자금의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겠습니다.
4. 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지정업소가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겠습니다.
5.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 · 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 · 주식 · 정기적금 · 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, 경마 · 카지노 등 도박행위, 경조사 · 여행비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겠습니다.
6. 영업장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.
7.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의 지시 및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위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의 어떠한 행정조치나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.

년 월 일

〔신청인〕 성명 (인)

**오산시장 귀하**

[별지 제4호서식]〈개정 2023. 9. 1〉

(앞면)

# 식품진흥기금융자금관리대장

| 업소명 | | 대 표 자 | | 업 종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소재지 | | 전화번호 | | | |
| 융자금액 | 원 | 대출일자 | | 대출이율 | % |
| 융자금 상환기간 | 년거치, 년균등분할상환 | | | | |
| 융자금의 용도 | 영업장 시설개선자금, 화장실 시설개선자금,<br>기타( ) | | | | |

융 자 금 상 환 내 역

(단위 : 원)

| 연월일 | 적 요 | 원금상환액 | 원금잔액 | 금회불입액 | 이자불입액 누계 | 상환 횟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|

(뒷면)

| 점검일자 | 점 검 결 과 | 점 검 자 |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직 | 성 명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
[별지 제5호서식]〈신설 2023. 9. 1〉

# 시 설 개 선 기 간 연 장 승 인 신 청 서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업소명 | | 전화번호 | | 영업자 | |
| | | | | 관리자 | |
| 소재지 | | | | | |
| 융자금액 | | 신청일<br>(오산시) | | 대출일<br>(농협) | |
| 융자 및 상환조건 |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(연 %) | | | | |
| 융자금의 용도 | 영업장시설개선 ( ), 화장실시설개선( ) | | | | |
| **시 설 개 선 내 역** | | | | | |
| 당초공사기간 | 년 월 일 ~ 년 월 일까지 ( 개월) | | | | |
| 연장 기간 | 년 월 일 ~ 년 월 일까지 ( 일) | | | | |
| 연장 사유<br>(구체적으로) | | | | | |
| 완공예정일 | 년 월 일 | | | | |
| 시공업체명 | | | | | |

「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10조에 따라 시설개선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**오 산 시 장 귀하**

| | |
|---|---|
| 구 비 서 류 | 시설개선기간 연장사유 증빙자료 |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[별지 제6호서식]〈신설 2023. 9. 1〉

<table>
<tr><td colspan="6">사 업 완 료 신 고 서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신고번호</td><td rowspan="2"></td><td rowspan="2">업소명</td><td rowspan="2"></td><td>영업자</td><td></td></tr>
<tr><td>관리자</td><td></td></tr>
<tr><td>소재지</td><td colspan="3"></td><td>전화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융자금액</td><td></td><td>신청일<br>(오산시)</td><td></td><td>대출일<br>(농협)</td><td></td></tr>
<tr><td>융자및상환조건</td><td colspan="5">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(연 %)</td></tr>
<tr><td>융자금의 용도</td><td colspan="5">영업장시설개선 ( ), 화장실시설개선( )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시 설 개 선 내 역</td></tr>
<tr><td>공사 기간</td><td colspan="5">년 월 일 ~ 년 월 일까지 ( 개월)</td></tr>
<tr><td>개선시설명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>완공 일자</td><td colspan="5">년 월 일</td></tr>
<tr><td>미착공시 사유</td><td colspan="5">* 구체적으로 기재</td></tr>
<tr><td>착공예정일</td><td colspan="5">년 월 일</td></tr>
<tr><td>완공예정일</td><td colspan="5">년 월 일</td></tr>
<tr><td>시공업체명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「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14조에 따라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<br><br>년 월 일<br>대표자 (서명 또는 인)<br><br>오 산 시 장 귀하</td></tr>
<tr><td>구 비 서 류</td><td colspan="5">1.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: 1부 (정기상환통장 제외)<br>2. 시설개선 완료사진(규격: 3×4㎝) : 1부<br>3.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</td></tr>
</table>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